

모두 발언

2025. 10. 14. (화) 15:0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2F)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님과
회계법인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있는
회계업계 여러분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I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당부말씀

회계정보는

시장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외부감사제도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공공적 책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논의할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은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리스크를 면밀히 고려하여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감사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도
감사품질에 대응하여 마련하는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 확산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독당국도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1}하고,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2}하는 등
제도적 지원과 감독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1 금융위·금감원은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 운영 등을 통해 지정기준·방식을
회계법인의 '인력·규모'에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 추진

*2 '25년부터 기존 감사인 감리주기(Big4: 2년, 그외: 3년)를 변경하여, 감사인 품질
관리수준 및 규모를 반영하도록 감리주기를 차등화(3~5년)

**둘째, 건전한 지배구조 아래 독립성을 확고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만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진 견제기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 확대
(기존) 소유·통제·경영의 통일성 판단 → (개정) 소유·통제·경영의 통일성 외에도,
이익공유·비용분담, 품질관리·사업전략·브랜드명칭 공유 여부 등 판단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¹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비감사용역 공시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²하도록 하겠습니다.

*¹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 (현행) 지배구조 설치 형태에 대한 설명 기재 →
(개선) 주요 지배기구의 구성원, 중요 의결사항 등 구체적 내용도 공시

*² 기업공시서식 개정 : (현행)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만 공시 →
(개선)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도 공시

셋째, 분식회계 위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독당국은 분식회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입니다.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곡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회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인이 소속 회계사의 감사기준 위법행위를 지시·묵인·방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 가능

감독당국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25.8.27.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① 고의 분식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 상향, ②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해 과징금 가중
(고의 위반 1년 초과시 1년당 30% 가중, 중과실 위반 2년 초과시 1년당 20% 가중) 등

넷째,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과 자본시장을 잇는
소통의 창구이며,
시장 참여자가 기업의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한 위험과 불확실성,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 등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기재 등을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응 과정을
충실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선정한 사항(선정이유와 이에 대한 감사방법·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 필요)

또한 복잡한 금융상품,
플랫폼·가상자산과 같은 新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검증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혁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할 경우
반복업무 자동수행, 검증범위 전수 확대 등으로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도
최종 판단은 여전히 감사인의 몫이므로,
기술 활용과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인적자원의 개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활용과 함께 요구되는
데이터보안과 정보보호도 빈틈없이 관리하여
다가올 감사혁신을 균형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감사기술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23~'24년중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TF」를 운영하여 감독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 도출된 추진과제(감사기준 개정 등)를 한공회 등과 함께 이행 중

Ⅲ 마무리 말씀

자본시장 신뢰의 바탕이 되는 회계정보는
감사인 여러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고도의 전문성과
굳건한 윤리의식에 기반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감사품질을 높여나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회계업계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자본시장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